

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03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관련법규 및 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,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의2(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
- 「하남시 사무위탁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, 제5조(위탁의 적정성 검토), 제6조(위탁계획) 및 제7조(의회 동의 등)
- 「하남시 보육조례」 제4조(위원회의 기능), 제14조(위탁운영) 및 제15조 (위탁계약)

2. 제안사유

-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「하남시 사무위탁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 :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
- 위탁시설

연번	위탁시설명	소재지	인가일	면적 (㎡)	정원 (명)	위탁기간
1	시립햇살어린이집	세미로1길 10-2 (미사힐즈파크1단지)	2020.05.14.	361	69	2025.5.14. ~2030.2.28.
2	시립청아어린이집	감일순환로 130 (스윗시티행복주택6단지)	2020.05.20.	374	73	2025.5.20. ~2030.2.28.
3	시립감일별화어린이집	감일순환로 95-2 (스윗시티8단지)	2020.10.20.	409	84	2025.10.20. ~2030.8.31.
4	시립일가어린이집	미사강변남로 10 (일가도서관 옆)	2021.04.26.	627	62	2025.12.24. ~2030.8.31.
5	시립감일리틀포레 어린이집	감일순환로 135 (감일포엠포레)	2021.01.19.	281	65	2026.1.19. ~2030.8.31.

- 위탁기간 : 계약일로부터 5년 ※ 학기 종료일에 따라 5년 이내 변경 가능
- 위탁사무 내용 :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
- 선정방법 : 위탁체 공개모집 ⇒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결정
- 2025년 소요예산 (안) (단위:천원)

세부 항목	사업비	산출근거	비고
계	1,402,824		
인건비 (국60%, 도28%, 시12%)	1,390,824	- 시립햇살 : 404,644천원 - 시립청아 : 333,979천원 - 시립감일별하 : 256,237천원 - 시립일가 : 268,881천원 - 시립감일리틀포레 : 127,083천원	<인건비 지원을> 원장 : 80% 영아반교사 : 80% 유아반교사 : 30% 조리사 : 100%
운영비 (전액 시비)	12,000	월 200천원 × 12개월 × 5개소	공공요금, 집기류, 보험료, 제경비 등

4. 위탁의 적정성 검토 사항

분석 기준		분석 내용	분석결과	비고
타당성	㉓ 서비스 중요성	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	높음	보육서비스 제공사무로 공공성 및 일상생활에 영향
	㉔ 서비스 수혜대상	한정적인 주민인지, 불특정 지역생활권의 주민 인지 또는 전 주민인지 등 수혜대상 주민의 범위	낮음	영유아 가정 및 어린이집 등 한정적 주민
	㉕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	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, 중단가능성,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	보통	위탁기간 5년으로 변경위탁 심사를 통해 서비스 공급가능
	㉖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	공공서비스 공급 중단시 피해의 심각성, 대체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	높음	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서비스 중단 시 피해가 큼
효율성	㉗ 민간의 전문성 활용	민간부문의 전문성 정도,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예상효과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가능성 등	높음	보육전문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필요
	㉘ 경제적 효율성	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, 조직 확대 방지, 비용절감(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) 정도 등	높음	민간위탁에 따른 경우 한정된 예산에 따라 운영계획 수립 및 자부담 후원금 등 기타 세입 충당을 통해 시 예산절감가능
	㉙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	공급 목표, 사업계획의 합리성,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의 설정과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	높음	추진실적 확인 및 만족도 평가로 사업성과 측정 용이
	㉚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	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,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(경쟁, 독과점),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	높음	수탁자 선정을 위한 법인, 단체, 개인 간 경쟁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
	㉛ 관리운영의 투명성	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및 예방 가능성,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	높음	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의 선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가능

※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10(민간위탁의 적정성 분석기준)

☞ 공공성(2)에 비해 효율성(5)이 높으므로 민간위탁 방식 수행 적정 사료

5. 향후 추진 일정

국공립어린이집명	추진내용	일 정	비고
시립햇살어린이집 시립청아어린이집	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체 모집 계획 및 공고	'25. 1. ~ 2.	
	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위·수탁 협약 체결	'25. 3.	
시립감일별하 어린이집	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체 모집 계획 및 공고	'25. 5. ~ 6.	
	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위·수탁 협약 체결	'25. 7.	
시립일가어린이집, 시립감일리틀포레 어린이집	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체 모집 계획 및 공고	'25. 7. ~ 8.	
	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위·수탁 협약 체결	'25. 9.	

6.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

-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원장 및 보육교사 등 운영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의 구체화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바,
- 어린이집 운영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, 단체, 개인 등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고,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관련 법령 및 조례

1 영유아보육법

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(국공립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1.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
 2. 삭제 <2018. 12. 24.>
 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②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제24조의2(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

법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.

[별표 8의2]

1. 일반기준가.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. 나.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,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.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. 다.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3 하남시 보육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제4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영유아 보육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

제14조(위탁운영)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(위탁계약)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,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이거나 위탁기관 만료일이 학기 중일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4 하남시 사무위탁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<개정 2023.5.1.>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위탁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그 밖에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위탁계획)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, 필요성, 위탁기간 및 조건
2. 범위, 내용 및 타당성
3. 보조 및 지원예산
4. 추진방법 및 일정
5. 기대효과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7조(의회 동의 등)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